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207

발의연월일: 2022. 9. 2.

발 의 자: 김수흥 · 김주영 · 최인호

김교흥 • 기동민 • 정일영

이명수 · 김민석 · 안규백

맹성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이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 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취약 계층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생활안 정을 지원하고 자산형성을 독려하기 위하여 해당 조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제88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
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한 과세특례)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	
(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	
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	
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	
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	
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	
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u>2022</u>	<u>2027</u>
<u>년 12월 31일</u> 까지 가입하는 경	<u>년 12월 31일</u>
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	
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